

인프라·인력·제도가 '뒷받침'

▶ 6면에 이어



지난해 12월 12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맞손을 잡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 ⑤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도시 꿈꾼다

기업·구직자 '윈윈' 법적 근거 새만금 산단 민간투자 가속화

이차전지특화단지, 연이은 대규모 투자유치 등으로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발돋움을 내딛고 있는 새만금에 든든한 디딤돌이 생겼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제64조에 근거한 특례를 통해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새만금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전기차, 이차전지, 에너지 신산업 등 첨단 미래 신산업을 기업들이 잇따라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고 속속 입주하고 있어 미래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새만금에서 지속적인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특례에 도내 구직자와 입주기업간의 매칭을 위해 관

련 지원 기관을 설치하고, 기업이 국내·외 우수 노동력을 제때 확보하고 구직자들에게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등 윈윈(win-win)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고용특구 조성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순환형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첨단전략산업 경제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 산단에 현재 가동중인 기업 관계자 A씨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고용에 따른 국비 지원 및 구인자·구직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의 지원 등이 기대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원활한 인력수급에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성공적인 특례 적용을 위해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 제정,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지원대책 협의 등을 거쳐 제도를 탄탄히 만들 계획이다.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새만금과 돈이 모이는, 가장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게 하려는 앞으로의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 ⑦야간관광산업 육성

전북의 아름다움, 밤에도 매력 '뽐뽐'

도내 문화·관광 콘텐츠 활용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노랫말처럼 전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밤이 아름다워질 전망이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제46조에 근거한 특례를 통해 도내 야간관광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그간 전북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아름다운 관광콘텐츠가 풍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으나, 정작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머무는 기간이 짧아 이를 타개할 대책이 필요했다.

야간관광 활동시 한국관광공사 연구결과 여행객의 평균 체재일수가 0.7일 증가(7.2일 → 7.9일)해 관광력 체류기간 증가 효과에 기여하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전북의 관광산업을 다시 부흥시킬 하든카드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북도는 도내 10개 시군에 지방소멸기금 9억원을 투입해 특색있는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과 경관 조성, 행사 개최 등으로 야간관광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방 관광 육성을 위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지난

2022년부터 시작했으며, 2023년 전주시가 선정돼 4년간 국·도비 포함 40억원을 투입해 전주의 역사 야간 체험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한, 야간관광활성화 연구용역(2024년 1월 완료 예정)을 통해 지역별 특색있는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과 경관 조성, 행사 개최 등으로 전북도내 야간관광 상품 개발과 야간관광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하고, 문화콘텐츠 연계 야간관광 스토리 구현, 야간에 특화된 매력적인 자원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도 시군과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야간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을 특례로 포함시켜 야간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됐을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 공모사업에 따른 한정적 국비 지원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기반 확충, 마케팅과 홍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전북도가 야간관광의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가속 페달을 밟을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 ⑥출입국 관리

근로자·기업 상생 롤모델로

'F-2' 등 비자 승급 지원 전북인으로 정착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63조에 담긴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근로자와 기업 상생 롤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령화·인구 소멸지역인 전북에 우수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정착시킴으로써 지역 산업계와 인구 감소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복합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산악관광진흥지구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비전문취업인력으로 E-9이란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뒤 6개월이 지나야만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산업의 특구·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

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체류기간과 가족동반 등 안정적인 삶을 통해 전북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도가 이처럼 출입국관리법 특례를 추진한 당위성에는 현재 특례 예비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지난 8월 16일부터 한달 간 진행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만족도가 78.8%(매우40.5, 만족38.3%)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무지, 업무, 급여, 복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또한, 기업의 경우 85.2%(매우46.6, 만족38.6)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화비자사업 재참여 의사도 95.5%를 기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정지역으로의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현상을 타개하고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탄력적인 이민 정책과 생활인구 정착 등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자며 정부를 지속 설득해 온 노력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이어 특례로 이어지게 만든 귀중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 ⑧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

청정 산림자원,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도내 동부권지역 인구소멸 대응

전국에서 손꼽히는 천혜의 산림자원을 가진 전북도가 산악관광의 선도주자로 나설 준비를 마쳤다.

산악관광은 산이 지닌 다양한 생태환경적, 역사문화적 자원 등을 체험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관광활동으로 국민 여가시간 증가와 휴양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광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세계 관광시장의 15%를 산악관광이 차지하고 있으며 치유·웰빙, 산악레저스포츠 등 전 연령에 걸친 수요 창출이 가능해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북은 전체 면적의 55.4%가 산림면적이며 특히 완주,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은 산림율이 70%가 넘는 등 산림율이 매우 높으나, 산악공간 이용과 활용이 극히 보수적인 우리나라 현실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많았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조항을 반영해 도내 산림자원의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활성화하고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지역을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산악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한다.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는 도지사가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산지 활용시 환경부·산림청·국토부·지자체 등 인·허가상 입지 및 행위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로 민간자본을 투자해 도내 우수한 산림지역에 리조트, 복합체험시설, 관광호텔 등 친환경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림자원의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관리하는 친환경 산악관광 기반마련을 마련하고 전북이 가진 자연, 문화 등 자원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장소를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